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지침

<그간 경과>

- ❖ '22.6.27. 고용부 차관 주재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시 업계에서 전산장비를 활용한 관리요령 게시 허용 요청
- ❖ 전산장비 활용 관리요령 게시 허용을 위한 지방관서·현장 의견수렴 (7.15., 8.16~19.)

□ 배경 및 목적

- 관리요령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상시 열람가능한 서면게시를 주로 인정
 - 다만 화학물질을 다수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종이게시물의 낮은 내구성, 관리 및 업데이트 어려움 등의 애로를 호소
 - *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시 전산장비를 활용한 관리요령 게시 가능 여부 건의,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의 경우 FAB내 미세먼지 관리수준이 엄격(0.1 μ m 이하)하며, 종이게시는 반도체 품질에 악영향 초래 호소('22.6.27.)
- 전산장비를 활용한 관리요령 게시 인정기준을 명확화하여 사업장 현장 환경에 맞는 편리한 정보전달체계 수립 필요

□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인정기준

- * 전산장비: 기업에서 전산시스템을 위해 설치·활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써, 근로자가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PC, 디스플레이, 키오스크 등을 모두 포함 (근로자 개인 소유 장비는 제외)
- 전산장비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방식* 게시를 인정
 - * 키오스크, 전광판, 모니터 등(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표출하여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취급근로자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상시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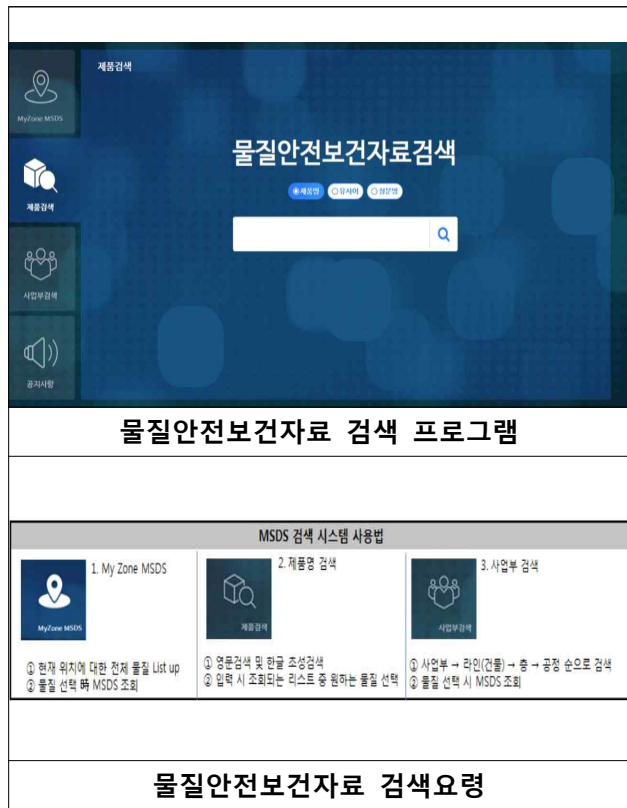
① 해당 디스플레이장비가 작업공정 내에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어야 함

* 휴대용 전자기기의 경우 작업공정 내에 상시 비치된 경우만 인정하며, 근로자 개인소유 기기 등 임의반출 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업공정 내'란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취급되는 생산라인 뿐 아니라 생산라인 근처에 설치되어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포함함

②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작업 공정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전산장비를 활용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사례 >



참 고 1

적용사례 (예시)

<전산장비 활용 MSDS 게시 인정 및 불인정 사례(참고)>

<p>가능한 게시방법 (현장게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내에 MSDS를 서면으로 인쇄하여 비치 및 게시 · 작업장 내 설치된 공용 전산장비에 취급화학물질의 MSDS를 비치하고 키오스크·디스플레이·모니터·전광판 등을 활용해 MSDS를 상시 표출해 게시
<p>가능한 게시방법 (전산장비 게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내 설치된 공용 전산장비에 취급화학물질의 MSDS를 게시·비치하고 현장 근로자가 전산장비를 사용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회사 업무용 포탈 또는 인트라넷 게시판에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MSDS를 업로드하고, 현장 근로자가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인정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장비를 사용한 MSDS 열람방법을 근로자에게 숙지하도록 교육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해 게시 <p>※ 관리요령에 MSDS로 직접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고 해당 QR코드를 통해 MSDS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 검색방법을 포함해 게시한 것으로 인정</p> </div>
<p>인정되지 않는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용 전산장비가 아닌 일부 허가된 관계자만 접근가능한 전산장비(보안 PC, 개인 업무용 PC 등)를 사용해 MSDS를 게시한 경우 · MSDS를 전 근로자에게 메일로 일시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내려받아 보관·열람토록 한 경우 <p>※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등은 인정하나 근로자가 상시로 정보를 편리하게 찾기 어려우며 정보가 삭제 또는 분실되기 쉬운 메일전송은 인정되지 않음</p>

<전산장비 활용 관리요령 게시 인정 및 불인정 사례(참고)>

<p>가능한 게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공정 내에 관리요령을 공정별로 서면으로 게시한 경우 · 작업공정 내에 설치된 키오스크·디스플레이·모니터·전광판 등을 이용해 관리요령을 상시로 표출하는 경우
<p>인정되지 않는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요령 게시장소가 공장과 떨어진 사무동 등 작업공정과 크게 떨어진 장소에 있는 경우 · 상시로 표출되는 디스플레이가 아닌 일부 허가된 관계자만 접근가능한 전산장비(보안 PC, 개인 업무용 PC 등)를 사용해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 · 관리요령을 공정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전부를 일괄 게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작업공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요령을 찾아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련 규정 】

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MSDS 게시)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법 제114조제1항)

○ 전산장비를 활용해 게시 가능하나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제3호)

* 전산장비를 작업 중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가동 취급근로자에게 MSDS 프로그램 작동,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방법 교육 관리요령 게시 시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

○ 건설공사,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에 대해서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할 수 있음 (산안법 시행규칙 제167조제2항)

※ 단 근로자가 MSDS 게시를 요구한 경우 게시해야 함

□ (관리요령 게시)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MSDS의 주요 내용*을 담은 관리요령을 작업공정별로 게시해야 함 (법 제114조제2항)

* 제품명,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취급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 관리요령과 MSDS는 내용, 목적 및 게시 장소 등이 다르므로 관리요령을 게시했다라도 MSDS 및 경고표시는 게시·비치해야 함

□ (경고표시) 사업장 내 화학물질들을 식별하고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MSDS대상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 제품명과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 등을 담은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리요령, 경고표지 작성 내용 비교 >

구분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요령	경고표지
게시 위치	화학물질 저장·취급 장소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비치	작업공정별로 게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용기 및 포장별로 각각 부착
작성 내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권고용도, 사용상의 제한, 공급자 정보	1. 제품명	1. 제품명
	2. 유해성·위험성 ※ 유해·위험성 분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기타 유해·위험성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6. 공급자 정보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유해·위험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3.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4.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5. 적절한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